

고용영향평가 대행기관 지정 고시

[시행 2022. 12. 26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6호, 2022. 12. 26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고용정책총괄과), 044-202-7234

「고용정책기본법」 제1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을 「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으로 지정한다.

부칙 <제2022-96호, 2022.12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